

대구지방법원 2019. 9. 4 선고 2019나303238(본소), 2019나303245(반소)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소유권이전등기]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19. 9. 4 선고 2019나303238(본소), 2019나303245(반소) 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 1. 29 선고 2017가단2994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성

담당변호사 곽정환

피고(반소원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익

변론 종결 2019. 7. 17.

판결 선고 2019. 9. 4.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 1. 29. 선고 2017가단2994(본소),

2018가단10374(반소) 판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경주시 C 전 149m² 가운데 가. 별지 참고도 4,5,6,7,8,9,4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44m²를 인도하고, 위 우사를 철거하고, 나. 별지 참고도 1,2,3,4,9,10,11,12,13,1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G 부분 105m²를 인도하고, 다. 별지 참고도 14,15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철제대문을 철거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경주시 C 전 149m²에 관하여 2012. 3. 20. 점유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의 나.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나.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피고가 현재 이 사건 채소밭을 점유하고, 이 사건 우사를 소유함으로써 그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제1심법정에서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H가 1977. 8. 14. K으로부터 '밭, 소로'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협약서(을 제1호증)가

존재하는 사실, 증인 D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경계가 1992년경부터 변함이 없고, 이를 그대로 피고에게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 D와 피고 사이의 1992. 3. 20.자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채전 및 소로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2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③ 기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을 제7, 8, 12,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제6, 17호증의 각 영상들만으로는 피고가 1992. 3. 20.부터 20년간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H가 K으로부터 밭, 소로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위 협약서(을 제1호증)에는 매도인인 K 본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H의 아들인 D와 피고 명의의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채전 및 소로'가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의미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② D 명의의 확인서(을 제15호증의1)에 '이 사건 우사를 본채 지은 뒤에 지은 걸로 기업됩니다. 현 우사와 담장은 매매 당시와 똑같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건축시기에 관하여 이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고, 위 협약서 및 D와 피고 사이의 1992. 3. 20.자 매매계약서에도 우사에 관한 기재가 없다.

③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6년경 무렵에는 피고의 대문이 인접 토지에 있는 주택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토지 소유 관계로 분쟁이 있었던 무렵인 2007년경 피고가 이 사건 대문을 현재의 위치에 설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항변 겸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고 피고의 반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미복

판사이준규

판사정인섭

별지